



제432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교육감후보자의 신분보장 등〉

■ 김민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668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교육감후보자의 신분보장 등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민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2. 29.
3. 회 부 일 : 2025. 12.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직해야 하므로, 현직에 있는 교육 관련 종사자나 전문가의 참여가 제약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육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인제가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최근 교원에 한정해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제도개선 논의가 진전된다면 교원뿐 아니라 학부모 등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휴직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이 피선거권과 평등권 보장 취지에 부합할 것임.

이에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장이 해당 임직원에게 휴직을 보장하도록 하여, 사직 부담 없이 공정하고 폭넓은 선거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교육감후보자의 신분보장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임직원에게 대하여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휴직을 보장하도록 하고, 해당 임직원이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및 안 제47조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조의2(교육감후보자의 신분보장 등)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임직원에게 대하여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에 따른 각각의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휴직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4조의2(교육감의 소환) (생략)	제24조의3(교육감의 소환) (현행 제24조의2와 같음)
제24조의3(교육감의 퇴직) (생략)	제24조의4(교육감의 퇴직) (현행 제24조의3과 같음)
제47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공	제47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

현행	개정안
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제49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5조제4항의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을 말한다)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u>교육감선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 ----- ----- ----- ----- ----- ----- ----- <u>교육감선거에서 제24조의2에 따라 해당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거나 해당</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 의견

-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서 공무원 등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 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상근 임원, 조합 상근 임원 등은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함. 다만, 「정당법」에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된 대학 교원은 그 직을 유지하면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음.

[현행법 규정 내용]

구분	규정 내용
교육감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제47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제49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5조제4항의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을 말한다)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감선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u>국가공무원</u>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u>지방공무원</u>.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u>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u> 또는 <u>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u>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u>공무원의 신분</u>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u>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u>

구분	규정 내용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 학교교원 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대학교원 정당가입 허용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 현행법상 공무원 등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직해야 하므로 현직에 있는 교육 관련 종사자나 전문가의 참여가 제약되고 있어 교육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인재가 교육감선거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한편,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원과 대학교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 실무자의 교육감 입후보를 장려하기 위해 교원이 교육감선거 입후보하는 경우 휴직을 보장하고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된 바 있음.

[교원의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신분보장 관련 개정안¹⁾]

구분	백승아의원안	강경숙의원안	고민정의의원안	김문수의의원안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휴직)	선거일 전 5개월부터 선거일 후 2개월까지	선거일 전 5개월부터 선거일 후 2개월까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후보허용)	입후보 휴직 시 선거일 90일까지 사직 예외 적용	선거일 90일까지 사직 예외 적용	선거일 90일까지 사직 예외 적용	입후보 휴직 시 선거일 90일까지 사직 예외 적용

□ 이와 관련하여 교원에 한정해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을 보장하려는 제도개선 논의가 진전된다면 교원뿐 아니라 다른 기관의 임직원 등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휴직 기회

1) 위 개정법률안들은 현재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계속 중임.

- 백승아의원안: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2201831),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220183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2201832)
- 강경숙의원안: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2210521),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221052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2210519)
- 고민정의의원안: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2212192),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221219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2212190)
- 김문수의의원안: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2213069),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221307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2213071)

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이 피선거권과 평등권 보장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60 일까지의 기간 동안 휴직을 보장하도록 하고, 해당 임직원이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사직 부담 없이 공정하고 폭넓은 선거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등 공직선거의 경우 공무원 등에 대한 입후보 휴직 및 입후보 휴직 시 90일 전 사직 예외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만 달리 적용하는 경우 공직선거 운영 상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보임.

또한, 공직선거 90일 전 사직하도록 한 현행제도는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개정안과 같이 입후보 휴직을 보장하고 입후보 휴직 시 입후보를 허용하는 경우 해당 입후보자의 지위·정보 등을 이용한 선거의 공정성 훼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직무 전념 곤란 등의 문제가 생길 우려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관계기관 의견]

○ 교육부: 신중 검토

- 타 공직선거의 경우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만 '휴직 보장', '휴직 자에 대한 입후보 허용'을 적용하는 것은 공직선거 운영 상의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있으며, 입후보자의 지위·정보 등 남용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 훼손, 직무 전념 곤란 등의 문제가 생길 우려
- 교육감 선거 휴직을 적용하는 대상을 '기관 또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의 범위가 모호하고 민간기업의 경우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인건비 가중 등으로 경영 문제와 직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

○ 시·도교육청(제주·경기·대구교육청): 신중 검토

- 「헌법」, 「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 필요

문 의 처

02)6788-5185